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

The Soviet Archival System from the Russian Revolution to the 1930's

조호연 (Ho-Youn Cho)**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기록물 관련법의 제정과 그 변화 | 〈참고문헌〉 |
| 3. 중앙기록관리기구의 설치와 그 변화 | |

〈국문초록〉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록물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우선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레닌에 의하여 서명된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룩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다. 따라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남대 인문학부 교수(kchoyon@kyungnam.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12월 11일

기록관리 업무는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기록관리총국(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КВД СССР, 약칭 ГАУ НКВД СССР)을 통하여 소련내무인민위원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요어 : 레닌, 스탈린, 포크로프스키, 국가기록фон드, 러시아혁명

〈ABSTRACT〉

The Bolshevik Revolution of 1917 resulted not onl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regime, but also in the critical changes in the Russian archival system. The Soviet government issued "Decree On the Reorgan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rchival Affairs in the Russian Socialist Federated Soviet Republic", which prepared the ground for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USSR. After having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in the 1920's, the decree, signed by V. I. Lenin, was changed into "The Decree on the Archival Administration of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by which the Bolshevik government was able not only to develop the conception of the State Archival Fond with the Single Archival Fond, but also to enlarge the archival collection. Besides, it was remarkable that the archival decree of 1929 provided the justification for actual developments of the archival institution. And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the decree improved the archival affairs by means of the defining of the conservation period.

It was at the beginning of the Stalin's period that the decree of 1929 was issued.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decree was one of the proofs as well as the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and the industrialization that Stalin gained the overall control of the Soviet government. It was confirmed when the Second Conference of Soviet Archivists was held from 25 May to 1 June in 1929. After this meeting, M. N. Pokrovskii, who was the director of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the course of the 1920's, lost the influence over the Soviet archival organizations, which meant that the autonomy of the Soviet archivists was reduced in a great degree.

The Central Archival Administration of the Bolshevik regime experienced the analogous changes. It was changed into the Central Archival Agent in 1929 when the Stalinist system became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it was significant that the Central Archival Administration of USSR was established. However, the Soviet archival affairs becam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N. K. V. D. in the period of the Great Purge.

key words : Lenin, Stalin, Pokrovskii, the State Archival Fond, Russian Revolution

1. 머리말

소련의 기록관리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소련의 기록관리체계는 중국과 북한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영향을 받아 국가체제를 정비한 국가들의 기록물 관리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외에도, 각 시기별로 당대 소련 체제의 주요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소련의 기록관리제도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많은 점에

서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 기원을 둔 것이었다. 그렇지만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제도적인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17년 10월에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 이후였다. 더구나 볼셰비키로는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투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혁명 관련 기록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도 하였다. 스탈린 체제가 명확한 모습을 띠게 되는 1920년대 후반은 급진적인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만이 아니라,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도 분기점이 되던 시기였다. 특히 1928년으로부터 1931년의 시기는 1960년대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신세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러시아의 구 인텔리겐치아가 제거되었다는 의미에서 “문화혁명”이라고 치칭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던 만큼,¹⁾ 기록관리제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이 점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의와 전(全)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포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 관리에 관한 법”(Положение об архивном управлении РСФСР)의 제정과 소련 중앙기록관리부의 창설 등으로 분명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글에서 혁명 이후 기록관리제도와 관련된 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개관한 다음, 1929년에 공포된 법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이 지닌 의미를 제2차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 대회를 통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련 초기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이 1929년을 기점으로 하여 어떤 조직적인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 기록관리제도가 지닌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기록물 관련법의 제정과 그 변화

원래 볼셰비키 정권은 1917년 10월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공포하여 소련기록물 관리제도의 초석을 마련한 바 있었다. 이 법령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일국가기록 폰드”(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ный фонд : ЕГАФ)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소련

1) S. Fitzpatrick ed.,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 1928~1931*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1984), p.1.

에서 국가기록물은 국가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²⁾ 그 구체적인 작업으로서 볼셰비키 정부는 1919년 3월 27일에 공포된 “혁명 전 근대의 기록물과 업무에 관하여”, 1919년 3월 31일에 공포된 “주(州) 기록 폰드에 관하여”, 1919년 7월 29일에 공포된 “작고한 러시아 작가들, 작곡가들, 미술가들, 학자들의,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의 사유 재산권 폐지에 관하여” 등의 법령을 잇달아 공포하여, 단일국가기록폰드 내에 들어오는 기록물을 규정하게 되었다. 신경제정책이 시행된 1920년대에 들어서도 소련 정부는 1923년 8월 2일의 법령으로 반정부 인사들의 기록물을, 그리고 1923년 9월 12일자의 법령으로는 제정 러시아 시기의 지배 가문인 로마노프 일가 및 몇몇 다른 인물들의 기록물들을 중앙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었다.³⁾

그렇지만 1918년의 기록물 법령은 그 이후의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국외적으로 보자면, 혁명 전에 기대했던 세계혁명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대체로 제정 러시아 시기의 영토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했고, 기록물 관리제도도 이에 따라 재편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기록물 자체로 보더라도, 기록물관리기관에 소장된 기록자료의 보존기간에 관한 문제, 자료에 대한 가치평가의 시행 문제, 단일국가기록폰드의 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미 1925년에 개최된 제1회 기록전문가대회에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기록관리제도 구축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측면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의와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Положение об архивном управлении РСФСР)은 이런 배경을 두고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1918년 6월 공포된 법령 이후 11년 동안 공포된 모든 기록관련 법령 및 규정을 일관화하고 보충한 셈이었다. 이 법은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기록폰드의 구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록물관리 기관들의 구조의 확정에 관하여 규정되

2) P. K. Grimsted,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 The Bolshevik Legacy for Soviet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vol. 45, no. 4 (Fall 1982), pp.429~443.

3)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М. : Российск. гос. гуманит. ун-т, 1994), С. 74.

어 있고, 기록물 관리기관들의 모든 업무를 행정, 기록-조직, 기록-기술(記述) 및 학술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령에서는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기록фон드(ГАФ)의 구성, 기록물관리기관, 조직, 사업체에 대한 기록물관리기관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국가 기록관의 체계, 기록사료의 평가 수행 방법, 기록 자료의 실질적이고도 학문적인 이용 등이 규정되었다.

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29년의 법은 국가기록фон드의 구성 범위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 안에는 혁명 이후에 폐지된 국가기구 및 협동조합 기구, 그리고 학술기구 및 다른 사회 및 기업체 등의 자료들,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경계 바깥에 위치했거나 위치하고 있던 각종 조직과 기구들의 자료들, 그리고 10월 혁명 이전 시기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서 활동했던 기구, 사업체 그리고 조직의 모든 기록물과 그들이 외국에 남겨놓았던 서류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기록물들도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기록фон드 속으로 이관되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기록фон드의 구성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 1919년에 공포된 “기록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하여”라는 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기록물을 단일국가기록фон드로 이관하도록 언급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역사를 담당하는 대표자들이 이 법령에 반대함으로써 자료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1929년 법에서는 “전(全)소련노동조합중앙소비에트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기록관리부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근거하여 러시아 영토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조합기구의 자료들이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기록фон드 속으로 편입된다”는 규정이 특별히 명시되었던 것이다.

또한 1929년 법은 개인들의 기록 수집물에 대한 기록물 관리기관의 권리를 이전의 법들보다 더 확대하였다. 가령 혁명 전의 차르 가문의 서류들, 차르의 궁정에서 측근으로 있었거나 고위 관직을 담당한 인물들의 기록물들, 또한 임시정부가 존속하던 기간 동안 국가의 직책을 담당한 인물들의 기록물이 국가기록фон드의 범위 속에 분명히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선전 및 선동의 목적으로 발행된 자료들도 국가기록фон드로 이관되어야 했다. 가령 혁명 및 반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포스터, 신문 등이 그러한 예였다.⁴⁾

4) В. В. Максaков, *История и организация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ССР 1917-1945 гг.* (М. : “Наука”, 1969), С. 193~194.

또한 이 법은 학술적인 목적 및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이나 사회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국가기록본드의 자료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을 보관하고, 정리하고, 기술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과 조직의 필요에 부응하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연구 활동을 통하여 국가 기구의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그러므로 기록물 관리기관은 국가기록관의 역사자료들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출판하는 작업을 준비해야 했다. 물론 이런 작업이 이전에도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법령안에 이런 내용이 명시된 경우는 1929년의 법령이 처음이었다.

1929년의 법령에서 두드러진 점은 특히 중앙기록관리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켜놓았다는 점이었다. 이제 이 부서는 일상적인 기록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법안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규칙, 지침서, 지시사항 등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구는 기록학과 기록보존기술 문제를 다른 학문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기록학과 관련된 보조학문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었다. 나아가 중앙기록관리부는 기록관리체계의 발전 경험을 담은 역사학술지인 『붉은 기록』을 발간할 수도 있었고, 기록전문가들의 대회 및 협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기록학과 관련된 강습회나 강연회, 혹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도 중앙기록관리국이 부여받았다는 점도 이 기관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또한 1929년의 기록물 법령에서는 국가기관에 보관중인 자료들의 보존기간도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것은 이전에 국가기관 내에 5년 동안 보관되도록 명시된 기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령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문건들이 보다 긴 기간 동안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자료가 해당 부서에서 10년 동안 보존되도록 규정되었고 그 이후에 국가 기록관으로 이관되도록 명시되었다.⁵⁾

또한 이 법령에서는 기록관에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었다. 가령 국가 및 사회 기관들의 작업을 위하여 출장업무수행중인 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기관에서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개별 연구자들이 그 속에 포함되었다. 기록관에서 작업한 사람들은 사본(寫本)을 전달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한 형태로 출판할 수는 없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사본을 전달해주는 것은 오직 외무인민위원부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기록관리국과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

5) *Ibid.*, p.199.

도록 되어 있었다.

1929년의 법은 1930년대 접어들어 계속해서 수정·보완되었다. 이 법이 처음 수정된 것은 소련 중앙기록관리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1930년 1월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 통해서였다. 이 때 쟁점이 된 사안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물 관리기구와 소련의 기록물 관리기구 사이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 이후에도 소련 중앙기록관리부는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기록фон드에 포함된 자료에 대한 권한을 점차로 확대해나가게 되었다.⁶⁾

이처럼 러시아혁명 이후에 소련이 추진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들은 한편으로는 기록물 관리의 법적 토대를 구축해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어가던 당대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기록물관련법은 기록물관리와 관계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었지만,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기록물을 직접 취급하는 전문가들의 자율성은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1929년의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이 공포된 직후인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이 행사는 소련 기록건설의 역사에서 중대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회로서 당시에 소련의 기록관리 분야 및 역사학계의 주요 인물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그 중에는 중앙기록관리부의 수장인 포크로프스키(М. Н. Покровский)는 물론이고,⁷⁾ 플라토노프(С. Ф. Платонов), 류바프스키(М. К. Любавский), 타를레(Е. В. Тарле) 등 저명한 역사가들도 있었다.⁸⁾

나중의 일을 고려하여 보자면, 이 대회는 포크로프스키가 기록관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피력한 기회가 되었다. 사실 이 무렵이면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소련 내에서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⁹⁾ 이 대회에서 확인된 바 포크로프스키의

6) *Ibid.*, pp.201~202.

7) 포크로프스키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 역사가로 인정받은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서 소련 기록관리제도의 정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포크로프스키의 역사학의 부침에 대해서는 다음 줄고를 참고하라. 조호연, “스탈린 시대의 역사학,”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논총』, 제14집(2001), pp.181~197.

8) 포크로프스키 이전에 소련 기록물관리제도의 초석을 놓았던 라자노프(Д. Б. Рязанов)는 와병 중이라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는 1년 남짓 지나 체포되어 30년대 말에 처형되고 말았다.

주장은 기록관리 분야에 관한 한 기록물을 보관만 하는 시기는 종결되었고, 이제 노동자 및 농민 대중들에게 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입장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기록물과 관련된 과업을 계급적인 의미로 파악하였던 그의 생각은 “기록관이 프롤레타리아트화되기를 바란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이런 입장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어가던 당대의 상황과는 역행하는 것이었다. 즉, 당시의 소련 정부는 기록물을 노동자와 농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록관리종사자들로부터 점차로 단절시키는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¹⁰⁾

사실 1929년 5월 하순으로부터 6월 초순까지에 걸쳐 개최된 제2차 기록관리종사자 대회는 소련 시기를 통틀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벌인 마지막 모임이기도 하였다. 이 대회가 개최된 지 3년 후인 1932년 12월로 예정된 전(全)소련기록전문가대회는 갑자기 취소되고 말았다. 소련 중앙기록관리부는 1936년에 전(全)소련 돌격대-기록전문가대회를 개최하였고, 1937년 8월에는 소위 전(全)소련 기록종사자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대내외의 과시용 행사였을 뿐 기록실무자들이 기록관리체계의 발전을 주제로 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벌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 무렵이 되면 소련의 기록관리체도는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스탈린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였다.

3. 중앙기록관리기구의 설치와 그 변화

볼셰비키 정부는 1918년 6월 1일 법령에 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소련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교육인민위원회 산하에 기록관리총국(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архивным делом при Наркомате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 약칭은 “구아드(ГУАД)” 혹은 “글라브아르히프(Главархив)”)이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1921년 11월 26일에 전(全)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인민위원회 산하에서 러시아소

9) 포크로프스키는 이 대회에서 당 기관지인 『프라우다』에 보낸 자신의 논문을 편집진이 종이공급 위기를 핑계 삼아 거의 2/3를 잘라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였다. 사실 이 무렵에는 『프라우다』의 편집장인 부하린은 사실상 편집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스탈린의 조력자로서 책임 비서로 임명된 메홀리스(Л. 3. Мехлис)가 모든 편집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10)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152.

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산하로 옮겨가게 되어 명칭도 “중앙 기록관리국”(Управление Центральным архивом при ВЦИК РСФСР, 약칭은 “첸트르아르히프”(Центрархив))으로 바뀌게 되었다.¹¹⁾

이 무렵까지 기록물 관리는 소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그렇지만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소련을 구성하던 개별 공화국들이 아니라, 소련 전체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25년에 개최된 전(全)소련기록협의회에서는 소련 차원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구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소련을 구성하던 대부분의 공화국들의 기록물 담당 관리자들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전소련 차원에서의 기록물 관리기구의 창설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들이 그러한 움직임에 반대한 이유는 소련 전체의 기록물 관리기관이 창설되면 자기들 공화국의 내부 업무에 간섭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11) 러시아 혁명 이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련과 러시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의 변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8~1922 : 기록관리총국(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교육인민위원회 산하 :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архивным делом при Наркомате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 약칭 Главархив)

1922~1929 : 중앙기록관리국(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산하 : Управление Центральным архивом при ВЦИК РСФСР, 약칭 Центрархив)

1929~1938 :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중앙기록관리부(Централь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РСФСР, 약칭 ЦАУ РСФСР)

1929~1938 소련 중앙기록관리부(Централь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оюза ССР, 약칭 ЦАУ СССР)

1938~1948 :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기록관리총국(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КВД СССР, 약칭 ГАУ НКВД СССР)

1948~1960 : 소련 내무부 기록관리총국(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ВД СССР, 약칭 ГАУ МВД СССР)

1960~1991 : 기록관리총국(소련 각료회의 산하 : 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СССР, 약칭 Главархив СССР)

1955~1990 : 기록관리총국(각료회의 산하 : 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약칭 ГАУ при СМ РСФСР)

1990. 11~1991. 9 : 기록업무위원회(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각료회의 산하 :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архивов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РСФСР, 약칭 Роскомархив)

1991. 9~1992. 9 : 기록업무위원회(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архивов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약칭 Роскомархив)

1992. 9. 30~1996. 8. 15 : 러시아국립기록청(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архив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 약칭 Росархив)

1996. 8. 15~2004.3.9 : 러시아연방기록청(Федеральная архив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 약칭 Росархив)

2000.3.9~현재 : 러시아연방기록국(Федеральное архивное агенство России)

판단에 따르자면,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들 사이에서 기록물 폰드를 할당하는 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¹²⁾

전소련 차원의 기록물 관리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별 공화국들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가령, 1926년 5월에 개최된 제1회 전(全)우크라이나 기록종사자대회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우크라이나소비에트공화국 영토에 존재하는 전소련 기관들의 기록물 폰드에 관한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하여 소련 전체 차원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를 창설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선언이 채택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기록물관리 대표들은 소련 차원의 인민위원부들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관한 업무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련 전체 차원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를 창설하기 보다는 소련구성 공화국들의 중앙기록관들이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소련 차원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가 창설된 것은 스탈린 체제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29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해 4월 10일에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소련 전체에 관계되는 폰드들의 관리에 관한 소련공화국들의 기록물 관리 활동의 공통된 방향과 통합을 위하여, 소련 중앙기록관리부가 설립되었다.

소련 중앙기록관리부는 활동 초기부터 소련의 기록관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 10월 혁명 중앙기록관 건물을 건축하고, 모스크바에 적군(赤軍) 폰드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노동조합기록관을 조직하고, 소련의 각종 기관들에다가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인민경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련 전체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1917년 2월 혁명과 관계된 서류들, 소련 권력의 성립과 관련된 서류들, 노동-농민 적군의 역사 및 내전사와 관계된 자료들, 혁명 이전의 중앙정부기관들 및 사회조직들의 보존기록물들이 소련 전체와 관계된 기록물 폰드로 인정되었다.¹³⁾

소련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한 곳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이었고, 소련 관련 기록물도 이 공화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기록관리부가 중심이 되어 사실상 소련 중앙기록관리부가 된 셈이었다. 그렇

12) В. В. Максaков, *История и организация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ССР 1917-1945 гг.* С. 228.

13) *Ibid.*, pp.228~231.

지만 소련 중앙기록관리부가 창설되었다고 하여 이 신설기구와 개별 공화국내에 존재하던 기존 기록물담당 기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이 문제가 정리되게 된 데에는 1931년 1월 7일에 개최된 소련 중앙기록관리부의 협의회에서 볼셰비키 당원이었던 크레토프(Ф. Д. Кретов)가 발표한 논문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크레토프는 이 논문에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물관리기구와 소련의 기록물관리기구의 역할이 중복된 데 대해 비판하면서 소련의 개별 공화국 차원보다 상위에 있는 기록물관리기구가 지닌 중요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기록물 부서의 권리와 다른 공화국들의 부서들을 동등하게 하고자 제안했으며,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기록관리부를 상위부서인 소련 중앙기록관리부에 완전히 복속시킬 것을 주장하였다.¹⁴⁾

크레토프가 이러한 주장을 전개한 배경에는 그의 정치적인 입장이 작용하였다. 그는 기록 업무가 자체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정치적 무기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수단이라는 점을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심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그는 기록업무와 관련된 두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 중 첫째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해(害)가 되는 기록 자료들의 이용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기록 자료의 보관 업무에서 경계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앞으로 당과 소련 당국의 어떠한 정치적 운동도 반드시 기록물관리기관측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가운데 하기 위하여 기록 업무를 조직하고 설정하는 것이었다.¹⁵⁾

크레토프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소련 정부가 추구하던 기록물관리제도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소련 전체의 기록물관리기관과 개별 공화국의 기록물관리기관의 관계를 다루었지만, 스탈린 체제 내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해주고 있었다. 사실 이 주장이 제기되고 있던 당시의 소련에서는 종이 부족 사태로 말미암아 재활용 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소위 “폐지수집운동”(макулатура)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이 전개되어 기록물조차도 마구잡이식으로 수집되는 형편이었다. 이 운동은 인민위원부의 노농감독국 협의회가 1928년 11월 28일자로 소련 노동국방소비에트의 결정에 근거하여 1928년 12월 20일에 “종이산업의 필요를 위하여 종이로 된 기록물 및 여타의 폐지를 각종 기관과 사업체로부터 징발하는 절차에 관하여”라

14)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168.

15) *Ibid.*, p.170.

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모든 국가, 노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 기관, 조직, 사업체, 그 중에 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들은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들을 종이공장의 원료로 보내기 위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했다. 이 운동은 1순위에 해당되는 종이에 대해서는 비현용자료 중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 자료를 1순위로 정해놓고 1개월 안에 재생용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정해놓았고, 예비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2순위로 정해놓고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였다.

이 운동은 성급하게 진행된 만큼 기록물의 보존에 심각한 손상을 주리라는 사실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1929년만 하더라도 “1순위” 자료로 분류되어 나온 폐지의 양이 러시아 전체에서 약 2만 톤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 중 상당수는 중앙권력기관의 할당액에 따라 서둘러 폐지로 나온 서류들이었다. 중앙기록관리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자면, 1929년의 초기 몇 달 동안에만도 모스크바에 소재한 46개의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이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하등의 절차 없이 폐지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기록관리국이 모든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해 회람문을 보내는 등 폐지수집운동의 폐해를 막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중앙기록관리국은 결국 기록관리종사자들이 개인적으로 폐지 창고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폐기처분될 운명에 처한 자료들을 찾아낼 것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¹⁶⁾

얼핏 보기에, “폐지수집운동”은 종이원료가 부족한 소련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어놓은 산업생산 촉진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폐지수집운동이 전개된 시점 및 이 운동이 기록물관리와 가진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운동은 기록물에 대한 소련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즉, 우리는 소련 정부가 이 운동을 통하여 기록관의 자율성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크레토프가 기록물의 통일적인 관리를 주장한 논문을 발표한 것도 소련 정부의 이런 일련의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모든 기록체계를 전체주의적인 정신으로 재편하는 최초의 성명서라고 볼 수도 있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크레토프의 논문이 발표된 1931년 1월은 기록관의 기구로서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개별 기록전문가들의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분기점이 되었다. 이 시점 이후에 소련의 기록물관리기관은 점차로 소련정부의 행정관료부서로 자리 잡아가게 되었다. 특히 기록관의 자율성을 강조하던 포크로프스키가 1932년에 사망한 이후에는 러시아소비에트연

16) *Ibid.*, pp.180~184.

방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기록관리부는 점차로 정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갔다. 그리하여 중앙기록관리부에 의하여 공포된 회람문, 지시사항 등 일련의 행정문서들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합동국가보안부, 노동검열국의 인민위원회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급기야 1936년 2월 5일자로 소련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인민위원부의 기록물을 인민위원부의 해당 부서의 권한으로 넘기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결정에 따라, 인민위원부 및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및 다른 공화국들의 중앙기관들의 기록업무의 상태에 대한 책임은 행정-경제부서의 부서장 혹은 이 기구들의 업무를 관할하는 자에게로 넘어갔고, 기존의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말았다.¹⁷⁾

이런 배경에서 1930년대 초부터 기록물관리기관 내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중심 업무가 무엇이나는 문제를 놓고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직후부터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의 1인자로 군림해왔던 저명한 역사학자인 포크로프스키, 그리고 그가 지명한 후계자인 막사코프(В. В. Максакoв) 등은 인민경제 및 학술연구목적으로 기록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기록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1932년 6월 23일자로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련 중앙기록관리부장으로 임명받은 베르진(Я. А. Берзин)은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도 일인관리제 원칙과 각 최상급자의 개인적 책임 원칙을 주창하고 있었다. 1934년 4월에 중앙기록관리부의 부부장 자리에서 막사코프가 경질됨으로써 베르진의 입장이 결국 소련 기록물관리기관의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베르진은 과거의 기록물 관리기관이 학문 연구자들에 대한 봉사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록 업무의 중심에 보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르자면, 기록물 관리기관의 첫 번째 당면 과제는 기록 자료의 기술적인 작업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목록 및 등록을 통하여 자료 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기록물 관리기관과 내무인민위원부의 기구들 사이의 협약에 기반하여 노동자-농민 민경대에 의하여 기록관의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베르진은 기록물관리기관의 두 번째 당면 과제로서 정치적으로 충실하지 않으며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을 기록관에서 숙청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베르진의 입장은 1935년 6월 27일자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의 간부회의에서 확

17) *Ibid.*, pp.171~172.

인됨으로써 소련의 기록관 정책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베르진의 입장이 우위를 점한 다음부터 소련의 기록관리기관의 종사자들의 모든 역량은 기록물의 이용보다는, 선별(選別), 기술(記述), 검사(檢査)에 집중되었다. 1937년 9월 10일자 전(奎)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런 작업의 최종기한, 그리고 일련의 기록보존소의 건설의 종료시점, 자격 있는 기록 간부들로 기록물 관리기관의 보충 작업의 완료 시점이 정해졌는데, 그것은 1938년이었다. 그런데 1936년부터 본격화되던 대숙청의 와중에 기록물관리기관의 개편작업을 지휘하던 베르진의 신상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소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베르진은 1937년 9월 7일자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으나, 결국 중앙기록관리부의 간첩 사건과 연루되어 1938년 8월 25일에 총살당하고 말았다. 1902년부터 당원이었으며 레닌의 망명 시절에 재정 문제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혁명 이후에는 외교관이자 코민테른 집행위원이기도 했던 베르진은 다른 많은 구(舊) 볼셰비키와 함께 대숙청의 와중에 희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후임자로 임명된 말체프(Н. В. Мальцев)는 기록관을 내무인민위원부의 기관들에게로 넘겨주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무렵이 되면 기록전문가들은 오직 내무인민위원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대숙청의 와중에서 내무인민위원부와 합동국가보안부 등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기록물 관리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자료 요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무렵부터 있어오다가 1934년에 키로프 암살 사건이 있고난 다음에는 기록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그 양이 증가하였다. 비밀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소수의 기록전문가 작업팀(가령 레닌그라드 당 기록관에서는 평균 2명에서 5명)은 노동시간을 12~14시간까지 늘리고 휴일을 완전히 없앴지만, 주문서에 대한 답변을 제 때에 제출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은 1937년에 군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면서 최고조에 도달하였다. 중앙기록관리부를 책임지고 있던 말체프는 소련 최고재판소 간부회의와 내무인민위원부에다가 "이런 작업은 너무 방대하여, 많은 재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중략〉... 우리는 스스로의 예산에서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¹⁸⁾

말체프는 할 수 없이 1938년 3월 2일에 10월혁명 중앙기록관과 적군중앙기록관(Централ

18) *Ibid.*, pp.174~178.

ьный архив Красной армии)의 책임자들에게 작업 중지 지시를 내렸다. 그렇지만 말체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는 바로 이 시점에 소련 정부로부터 기록물관리기관을 내무인민위원부 관할로 넘길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리하여 그 때 내무인민위원부는 중앙기록관리부를 자기 소속 부서로 만듦으로써 모든 기록관리 체계를 자신에게 예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1917년의 러시아 혁명 이후의 소련의 기록물 관리제도를 법적인 측면과 중앙관리기구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은 바 있었다.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으므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1921년에 중앙기록관리국으로 바뀌었다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소련 중앙기록관리부는 크레토프의 논문이 발표된 1931년부터 점차로 개별 공화국들에 소재한 중앙기록물관리기구보다 상위의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이런 추세는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도 일인관리제 원칙과 각 최상급자의 개인적 책임 원칙을 주창하던 베르진(Я. А. Берзин)이 부상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관리 업무는 베르진의 후임인 말체프 때에 이르러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소련내무인민위원부에 직접 소속된 기록관리총국(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КВД СССР, 약칭 ГАУ НКВД СССР)으로 격하되고 말았다.

결국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소련 기록관리 제도를 거시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기록물 관리 분야 역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해가던 스탈린 체제하에서 점차로 자율성을 상실해가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이러한 예는 기록물 관리 업무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해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만큼 더욱 더 기록전문가들이 권력과 적절한 관계설정을 통하여 기록관리 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방일권. "러시아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 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RGIA)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7호 (2003.4) : 75~105.

조호연.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 『기록학연구』 제10호 (2004.10) :

324~369.

Козлов В. П. ред. *Архивы России : Москв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осква :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ий центр, 1997.

- Чернобаев А. А. ред. *Историки России Биографии*. М. : Росспэн, 2001.
- Кобрин В. *Кому ты опасен, историк?* М.: Московский рабочий, 1992.
- Козлов В. П. *Российское архивное дело архивно-источниковед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 : Росспэн, 1999.
- Амиантов Ю. Н. ред. *Краткий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М. : Благовест, 1993.
- Максаков В. В. *История и организация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ССР 1917-1945 гг.* М. : Наука, 1969.
- Хорхордина Т.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М. : Российск. гос. гуманит. ун-т., 1994.
- Шмидт С. О. *Археография. Архивоведение. Памятниковедение*. М.: Российск. гос. гумани. ун-т., 1997.
- Автократов В. Н. "Из истори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1917-1918 гг.),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 no. 3 (1993) : 9-34.
- Автократов В. Н. "Из истории орган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1917-1918 гг.),"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 no. 4 (1993) : 3-27.
- Нарочничкий А. Л.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ленинского декрета".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no. 5 (1987) : 3~13.
- Grimsted P. K. "Soviet Archives and Manuscript Collections :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Slavic Review*, 24 (March 1965) : 105~120.
- Grimsted P. K.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 The Bolshevik Legacy for Soviet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vol. 45, no. 4 (Fall 1982) : 429~443.
- Grimsted P. K. "Russian Archives in Transition: Caught Between Political Crossfire and Economic Crisis." *American archivist*. 56, no. 4 (Fall 1993) : 614-662.
- Grimsted P. K. "Displaced Archives and Restitution Problems on the Eastern Front in the Aftermath of the Second World War."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Vol. 6 no.1 (1997) : 27~74.

КСІ